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 43,199



이호경

인권연대 캠페인 43,199

인권연대



을 산는 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43,199



## 글 짓는 순서

---

캠페인 <43,199> 위원회	5
1. 캠페인 <43,199>란?	7
2. 벌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1) 벌금제와 노역장 유치제도 – 최정학 / 방송대 법학과 교수	11
2) 벌금미납자, 감옥살이 대신 땀 흘리기 –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
3) 법치(法治)인가 법치(法恥)인가 : 벌금제와 노역장 유치제도 – 고영직 /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18
4) 벌금형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그리고 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 유치의 개선방안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1
5) 돈으로 자유를 사다 – 이찬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4
6) 43,199, 한국의 레미제리블, 징발장들의 원망이 쌓여가고 있다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27
7) 징발장 43199 – 서해성 / 소설가	31
3. 만화로 보는 <43,199> – 류호경 / 화가	35
4. 벌금제도 개선방안 – 김희수 /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47
5. 캠페인 <43,199> 참여방법	61

## 캠페인 <43,199> 위원회

43,199라는 숫자는 2009년 한 해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캠페인 <43,199> 위원회는 '벌금제 개혁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은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안은 <43,199> 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도입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잘못된 벌금제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43,199>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 상임위원

김희수(변호사), 류호경(화가),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해성(소설가), 여재훈(성공회 신부/ 다시서기 지원센터 소장),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육영수(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호인수(천주교 신부/ 인천교구 부개동성당 주임신부)

### 위원

고병권(수유너머 R), 고병현(성공회대학교 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고은(시인), 권보드래(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김녕(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대원(일본 릿교대학교 교수), 김상범(장애인인권센터 소장), 김영미(중학교 교사),  
김종배(시사평론가), 김창남(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효진(장애인인권센터 이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승아(시민), 문무우(시민), 박홍식(영화감독), 서상덕(가톨릭신문사 기자),  
오영호(시민),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인영(고려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위대영(변호사), 위문숙(서울 DPI 회장),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윤다정(언론인), 이명원(문화평론가),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은규(인권연대 숨 일꾼), 이재상(CBS PD), 이재성(한겨레 기자), 이지상(가수/ 작곡가), 이찬수(서울대학교 교수),  
온종복(인문사회과학방 '풀무질' 일꾼), 장경욱(변호사), 장현주(시민), 정선호(여수건설노조 조합원), 조건영(건축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조효제(성공회대학교 교수), 천정배(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최낙영(출판인),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한승현(변호사/ 전 감사원장), 한홍구(역사학자, 성공회대학교 교수),  
허홍렬(치과의사), 흥세화('말과활' 발행인), 홍승권(삼인출판사 부사장), 황미선(초등학교 교사)

캠페인 <43,199> 위원으로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인권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캠페인 <43,199>란?

벌금형(罰金刑)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구금시설에 가두는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自由刑)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자유형(自由刑)은 기본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교도소에서의 범죄 오염 등의 폐해와 적지 않은 수감 비용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의 재산형(財產刑)은 그래서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범죄의 대가로 돈을 빼앗는다면,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만한 경미한 범죄나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선고가 전체 형사처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형(刑)의 종류를 바꿔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를 환형유치(換刑留置)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한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벌금마저 내지 않는다면(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짚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43,199'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 미납(未納)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벌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결국 매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再犯)의 우려가 높거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혀야 하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라는 건,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혹한 비인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건 확실히 제도가 잘못된 탓입니다. 우리나라 벌금제는 죄질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벌금을 내게 합니다. 얼핏 보면 공평할지 모르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차이가 엄청난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100만원의 벌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이지만, 재벌

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벌금 방식을 총액벌금제(總額罰金制)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냅니다. 독일은 형법에 소득에 따라 1 유로에서 5천 유로까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 정합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한 다음에 5일(日)에서 360일(日)의 일수(日數)를 죄질에 따라 선고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일수 벌금제(日數罰金制)라고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소득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내고 있으니, 그만큼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구분한다면,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完納)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눠 낼 수 있다면, 또는 다만 몇 달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 등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지만,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매년 100만 명쯤 되는 시민들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국적 상황을 생각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로 바꿔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도 없는 아주 가벼운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규정처럼 “법률로 정한 아주 특별히 해로운 행위” 만을 범죄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몸의 중심은 뇌나 심장이 맞겠지만, 손톱 밑의 가시나 목에 가시처럼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온 몸의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그게 온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끝이나 발끝도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픈 곳을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아픈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지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픈 존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하는 야만적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권연대는 벌금제 개혁을 위한 캠페인 <43,19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지 않는 낯선 대목도 많을 것입니다. 해서 특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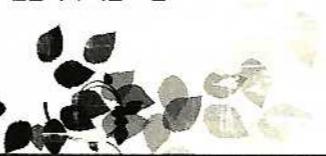
류호경 화가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만평을 그려주셨습니다.

잘못된 벌금제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법이 제대로 지킬만한 것인지를 살피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권해주시거나, 자료집의 뒷부분에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몇 가지 실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벌금제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장발장 43,199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3월  
인권연대 드림

벌금제에 대한 고민 1



## 벌금제와 노역장 유치제도

최정학 / 방송대 법학과 교수

현대사회에서 형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선 교도소, 즉 자유형을 떠올릴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단지 국가의 형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구금제도가,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교화원을 거쳐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형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현대 형벌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유형은 벌금형이다. 자신의 재산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금전을 납부하는 것이 형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봄직도 하다. 하지만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보면, 특히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형벌이 의도하는 ‘고통의 부과’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 돈으로 형벌을 살 수 있는 제도

문제는 이러한 벌금형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벌금제-사건에 따라 벌금형의 전체 액수만을 정하는 것—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현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건희 회장이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것과 일반적인 서민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래 사람마다 형벌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이를 ‘형벌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벌금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람에 따라 이러한 감수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회의 본질적인 불평등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사람은 ‘돈으로’ 형벌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형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제도가 또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노역장 유치제도는 무엇보다 우선 형벌의 종류와 성격을 바꾼다는 문제가 있다. 법관은 형벌을 선고할 때 형벌의 양을 정하기에 앞서 그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범죄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

자의 상태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부과할 형벌을 정하거나와, 이 때 자유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간주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노역장 유치제도는 이렇게 선고된 벌금형을 사실상의 자유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 행형제도에서 '노역장'이라는 시설은 없고 이들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몸으로' 형벌을 끼워야 하는 것이다.

### 돈이 없어 몸으로 형벌을 끼워야 하는 현실

비록 대개는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2009년에 노역장유치를 당한 사람이 모두 4만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이다. 또 본래 벌금형은 이른바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의 폐해-형벌이 의도한 개선효과는 없고, 다른 죄수들로부터 범죄학습만을 받게 된다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선고된 형벌과는 정반대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 벌금형 집행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첫째, 벌금형의 집행방법을 유연화 내지는 다양화하는 것이다. 현재 벌금은 선고된 후 3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만 한다. 개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선고된 액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전체 액수를 수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제도나 일정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연납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해 납부 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를 관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자유형에만 인정되고 있는 집행유예 제도를 벌금형에도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 집행유예란 형벌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또 범하지 않는다면 선고된 형벌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에 대한 반성의 빛이 뚜렷하고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는 등 집행유예의 조건은 반드시 자유형의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유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에도 이와 같은 형벌의 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에는 이미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굳이 집행유예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론

도 있다. 여하튼 이상의 벌금 집행방식의 다양화 방안들이 노역장 유치의 집행건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단기자유형이 갖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다.

### 하루 5만원씩 치는 건 맞나?

둘째,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집행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납부 의무자에게 벌금을 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 자유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노역장 유치가 사실상 자유형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인정되는 가석방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납부 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할 의사 있는이나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대신에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주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노역장 유치 하루당 5만 원의 벌금이 적정한지 아니면 10만 원 혹은 50만 원이 적당한지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사건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고액의 벌금인 경우에는 일수 정액(노역장 유치 하루에 해당하는 벌금액)이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일수 정액이 높아지면 고액의 벌금이라도 낮은 액수의 벌금과 같은 기간의 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마련되고 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일수벌금제 도입해야

셋째, 위의 자유형 환산 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벌금형의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란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수 정액'의 둘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을 50일의 일수 벌금에 처하고, 각 일수의 벌금액은 10만 원으로 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액벌금제가 갖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벌금의 납부율을 높여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와 같은 제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국세청의 과세자료 파악능력도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불평등을 줄여보자.

끝으로 노역장 유치와는 직접 관계없지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벌금형은 어쩔 수 없이 개인에 따른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형벌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 사이에서 보다도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그것과 똑같이 규정해 놓음으로써, 벌금형의 기업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거의 없게 만드는 정도에 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돈 없는 개인이 겪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벌금제에 대한 고민 2



## 벌금미납자, 감옥살이 대신 땀 흘리기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몇 백만 원의 돈, 누구에게는 하룻밤 솔값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재벌 2세에게는 국회불출석하고 벌금으로 낸 푼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매년 4만 명에 달하는 경미 범죄자들은 몇 백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소중한 자유를 속박 당하고 있다.

벌금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2009년에는 가장 많아 43,199명에 달했고 2011년의 38,242명은 기결수용자 수(2011년 말 31,198명)를 넘는 인원이고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45,038명)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그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같은 경제적 약자이자 사회적 소외계층이라서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과 자유를 맞바꾸고 있다.

막말로 가진 것이 몸 밖에 없어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죄 지은 힘없는 자라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빵 한 조각 흠친 죄로 징역을 산 장발장처럼 교도소에 갇혀 지낸다. 성격은 다르지만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어느 전직 대통령과 대비된다.

### 장발장처럼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굳이 교도소에 보내지 않는 대신 벌금납부로 짓값을 치르게 하는 형벌이다. 벌금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킨다. 문제는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금형은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벌금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돈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납부만하면 두렵지도 않고 고통도 주지 않는 형사재판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노역장에 유치된 대부분 사람들은 죄질이 무겁지도 않

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실제 노역 수형자의 상당수는 단순 절도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1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들이다. 경제적 능력만 되면 벌금을 납부해서 교도소 담장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 **법원이 정한 유치기간도 불평등하다.**

그런 범죄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벌금형인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유치기간 산정도 불평등하다.

총액벌금제에서도 유치기간 산정에는 일수벌금제처럼 운영된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선고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재벌 총수들은 수천억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몇 달만 선고된다. 하루 노역금이 보통 5만원이지만 그들에게는 2천만 원, 5억 원 등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역장에서 조차 ‘유전무죄’의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 질병을 앓고 있어 노역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둬서 얻을 게 뭘까**

경제적 능력도 없고 질병을 앓고 있어 노역을 할 신체적 여건도 안 되는 자들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형자 개인에게도 사회관계의 단절로 인한 재사회화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국가도 수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벌금형 집행을 위한 노역장유치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다. 유치시설이 독립된 것도 아니어서 노역장 수감생활을 통해 범죄환경에 접촉될 우려도 크다. 경미 범죄자이기도 하고 유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노역 수형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미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감 대신 땀 흘리기**

사회봉사가 대체 자유형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은 형법의 대체 자유형의 집행에 관해서 위임받은 연방 각주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감 대신 땀 흘리기— 대체 자유형 대신 사회봉사 (Schwitzen statt Sitzen – Gemeinnützige Arbeit statt Ersatzfreiheitsstrafe)”를 활용하고 있다. 공익적이고 무보수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도소에 구금시키지 말고 땀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한 교통비와 식비 같은 경비를 지급하는 등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벌금 미납 시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속죄하면서 형벌의 중함을 알고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역장 유치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해 패商会하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런 것일 뿐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벌금 집행방식을 자유형처럼 다양화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서 벌금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수벌금제도가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차등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은 타당치 않다.

경제적 능력이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벌금 액수가 차이가 난다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책임원칙이 불법에 상응하는 고통(형사제재)을 부과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100만 원의 벌금이 주는 경제적 고통이 자력 자와 무자력 자에게는 다르기 때문에 불법에 상응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는 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도 가혹하다.**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자들에게는 30일이라는 벌금납부 기간은 가혹한 데드라인이다.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수배자가 되고 더욱 형편이 어려워진다. 벌금을 벌기 위해 보험 사기와 같은 범죄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제2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9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실태를 분석하여 신청건수가 적은 이유 등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있는 벌금 분납·연납제도도 법률에 명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회봉사를 할 정도의 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벌금형을 집행유예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벌금을 낼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은 대체로 부랑인, 노숙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이므로 벌금형 선고유예나 노역장 유치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벌금이 적절하다면서 징역을 살리는 법원 판결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죄 지은 자일지라도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벌금제에 대한 고민 3

## 법치(法治)인가 법치(法恥)인가 - 벌금제와 노역장 유치제도

고영직 /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신축 건물이어서 그런 것일까. 서울남부교도소의 외양은 여느 학교 건물과 다를 바 없었다. 담장은 야트막했고, 담장 안과 밖 어디랄 것 없이 오월의 눈부신 햇살이 골고루 내리쬐고 있었다. 옛 영등포교도소가 이전한 서울남부교도소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그러했다. 이중, 삼중, 사중의 철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교육장에서 스무 명 남짓한 수인(囚人)들을 만났다. 창 밖에서 내리쬐는 오월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수인들의 얼굴 표정은 밝지는 않았다.

### 애써 속울음을 참으며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들

어느 시인이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신경림)고 썼던가. 푸른 옷을 입은 수인들의 얼굴 표정에서 애써 속울음을 감추며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갈대’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수인들과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시(詩)를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나는 수인들이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안의 열망과 의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수인들과 함께 신경림과 이정록의 시를 읽었고, 브레히트와 타고르의 시를 읽었다. 이정록의 동시 「아니다」를 읽으면서는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손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듯 ‘샤우팅’을 함께 했다. 그런 후에는 담장 안이든 밖이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용기 있는 행위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처음에 비해 수강생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이상국의 시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를 읽은 후에는 몇몇 수강생들이 이 시가 말하는 전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다음의 시 구절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벌 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아다 /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 눈물자국을 안 보이려고 /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어느 수인은 이 시를 읽은 소감을 묻는 나의 질문에 참치 외항선을 타며 가족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던 시절을 회

상했으며, 어느 수인은 단속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4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형’이라는 사실상의 징역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

### “참, 잔인하십니다, 선생님!”

그날 서울남부교도소 특강에서 어느 수인이 악수를 내게 청하며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 손을 덥석 잡은 그 수인이 “참, 잔인하십니다, 선생님!” 하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수인은 이상국 시인의 시를 읽으며 수업 내내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수인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시적 표현이지만,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수인으로서는 너무나 ‘절실한’ 일상의 욕망을 가족들과 지금 당장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장탄식의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그래서 내게 “참, 잔인하십니다”라며 돌직구를 날린 것이리라.

나는 인권연대가 수년 전부터 운영하는 〈평화인문학 과정〉에 문학 강사로서 참여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진행된 〈평화인문학 과정〉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수인들이 교육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역장 유치 처분은 벌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서 환형(換刑) 처분을 하도록 한 관련 법률(형법 제69조)에 의거한 처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몸빵’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의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박범계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현황을 보면 ‘평균 41,000여명’에 달한다! 인권연대는 이 자료에 의거해 2013년부터 캠페인 〈기억하라 43,199!〉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 시대에 장발장이 이토록 많단 말인가?

43,199명이라, 너무나 많지 않은가? 우리 시대 ‘장발장’들이 이토록 많단 말인가?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징역형을 살았던 장발장의 삶과 운명을 다룬 영화 〈레미제라블〉에 감동했던 나 자신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이토록 많은 ‘장발장’들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오히려 ‘양산하는’ 사회체제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가난을 엄벌하다』에서 프랑스의 ‘마노 두라(mano dura, 강철 주먹)’ 정책은 일종의 ‘똘烈왕스 제로’ 정책으로서 ‘시장주의-사회 보조 축소-형벌 확대’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정책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이 ‘철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 가난을 염별하는 사회

가난을 염별하는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논어」에 나오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화나는 것이다(不患貧 不患均)”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법과 제도가 오히려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을 양산하는 사회를 말의 온전한 의미에서 법치(法治)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의 법치는 어쩌면 법치(法恥)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상국 시인의 시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다.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 불을 있는데로 켜놓고 / 숟가락을 부딪치며 저녁을 먹자”.

벌금제에 대한 고민 4



## 벌금형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그리고 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 유치의 개선방안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벌금형은 범죄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박탈을 통한 사회소통적 의미의 형벌이다. 오늘날 벌금형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형벌이 되었다. 벌금형은 단기 자유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풍의 폐습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고(형법 제70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형법 제69조제2항). 결국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환형제도)가 마련되어 벌금형의 최대의 장점인 악풍의 폐습 방지,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단절 방지 등이 사라져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인권연대 캠페인 <43,199>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정학 교수님께서 벌금형을 환형처분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다. 너무나 주옥같은 기고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형벌제도 자체에서 생래적으로 기인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는 현재의 벌금형이 총액벌금제도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계없이 부과되어 이를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야 한다.

범죄의 죄질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살인죄의 형량이 절도죄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형에 대하여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의 경우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의 3가지 범죄를 침해 법익의 경증으로 평가하면 비밀침

해죄가 가장 높은 법의 침해가 있으며, 다음으로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가 가장 낮은 법의 침해를 가지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법의 침해의 경중에 따라 징역 3년, 2년,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모두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 벌금형은 법의에 전혀 비례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본질은 범죄인의 잘못에 대한 응보적 성격에 있으며, 형벌 부과의 목적은 일반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형벌 부과의 기능은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즉 형벌부과는 사회구성원과의 대화소통론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형벌부과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형벌의 부과는 인간존중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구현하고 형사사법의 정의가 발현되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 환형유치,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벌 중 벌금형은 이러한 죄질에 비례하여 규정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형벌 부과 자체가 형사사법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벌금형의 부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환형처분도 인간존중 중심의 헌법 가치에 반할 수 있다. 결국 환형처분을 함께 근거가 되는 형벌 특히 벌금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형처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앞서 많은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형처분을 하는 벌금형에 대한 구조적·태생적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는 바이다.

#### 환형유치가 필요하지 않은 제도 도입 필요

환형유치제도는 앞서 지적한 교수님과 박사님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의 분납제도 마련, 벌금형 미납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벌금형 환형처분에 대한 개선안들도 매우 타당성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환형유치가 필요하지 않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도를 마련하여 피고인의 자력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력이 200억 원이 되는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과 자력이 2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500만 원은 분명이 다른 체감적 형벌이 될 것이다. 당연히 200억 원 있는 사람은 벌금형 납입에 지장이 전혀 없겠지만 2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은 사실상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노역장 유치에 처하여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日數)벌금제 도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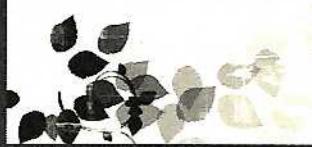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러한 총액벌금제도를 일수벌금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수벌금제도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먼저 피고인의 자력을 검토하고 난 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결정하고 난 다음 죄질에 비례한 일수를 결정하고 이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출 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를 들면 행위불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0억 가진 피고인의 경우 하루에 납입할 벌금  $200\text{만 원} \times \text{일수 } 20\text{일} = 4000\text{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2000만 원 자력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하루에 납입할 벌금  $2\text{만 원} \times 20\text{일} = 40\text{만 원}$ 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다면 피고인의 자력에 맞는 벌금이 선고되어 자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많은 벌금액이 부과될 것이며, 자력이 적은 피고인에게 낮은 벌금액이 부과되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력에 합당한 벌금액이 부과된 것이므로 각각의 피고인이 벌금액을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일수벌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높은 헌법적 가치질서인 인간존중 정신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구조적 모순과 총액벌금제도로부터 생래적으로 기원하는 자력의 유무에 의한 벌금형의 납입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환형조치로서의 노역장 유치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벌금제에 대한 고민 5

## 돈으로 자유를 사다.

이 찬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인간이 극복해야 할 악이란 어떤 것일까? 철학자 칸트는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을 구분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악은 자연적 악이 아니라 도덕적 악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루소도 칸트처럼 자연 신체적 불평등과 정치 도덕적 불평등을 구분해, 자연 신체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 도덕적 불평등은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 적은 없었고, 정치 도덕적 불평등은 정당화되거나 외면되어 왔다. 자연·신체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전생의 죄, 신의 섭리 운운하며 종교적 세계관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했다. 그런 의미의 도덕적 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불평등을 방지하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

물론 인간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닌 다음에야 최소한의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힘이 세거나 약하고, 지능이 높거나 낮고, 잘 생기거나 그렇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등, 우리는 구체적 행위와 관계없는 선천적 불평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평등하지 못한 상태, 즉 불평등이라는 말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듯이, 불평등은 극복의 대상이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한 불평등을 방지하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외침도 곳곳에서 들려 왔다. 외적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 인간의 본질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늘 있어 왔다. 가령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웠던 프랑스 혁명(1789)은 인간의 평등을 향한 끝없는 도전의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이가 하늘을 모시고 있고(侍天主) 인간이 하늘(人乃天)이라며 남녀노소의 동권을 선포한 동학혁명(1894~1895)이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적인 도전이었다. 인도에서는 봇다가 힌두교의 계급 차별에 도전하며 평등사상을 꿈꾸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가 그랬다. 자연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각자들의 비전이었고, 자연적 불평등을 사회적 평등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태생적인 이유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불평등하다는 것이 스승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교과서에서 배우며 자랐다.

신분의 차별도, 성별 차이도, 신체의 크기도, 피부색의 다름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만들었거나 스스로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선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또 최소화해야 한다. 선천적인 불평등의 사회적 최소화가 오늘날 인류애의 기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그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이들로 인해 오늘날 그나마 평등이니 하는 용어를 입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평등을 위한 오랜 노력들

예수 같은 이는 신에게는 차별이 없으니 사회적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헛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신다고 믿었다.(마태 5, 45) 헛빛과 비의 입장에서는, 즉 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에게 선·악, 정·오, 우·열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가 보는 평등한 은총의 세계였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을 구현하는 데 목숨까지 바쳐야 했으니, 평등 세상에 대한 희망은 저절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평등에 대한 상상이라도 하게 된 이면에는 누군가의 목숨 건 저항이 있었던 것이다. 그 저항을 통해서만 평등은 겨우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왔다. 인권이라는 것도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알고 보면 누군가의 저항의 결과였다. 모두가 출가해 열반에 들 수 있도록 허락한 봇다는 당시 힌두교 사제들에 의해 산된 가르침(외도)으로 비난받았다.

무함마드가 알라는 한 분이시며 알라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하자, 자신들의 최고신을 놓락했으며 당시 기성세력은 무함마드를 죽이려 했고 전쟁을 선포해왔다. 그런 식으로 선구자의 삶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자명하고 단순한 사실을 제대로 느끼는 이들의 저항을 통해 그나마 이 정도로 굴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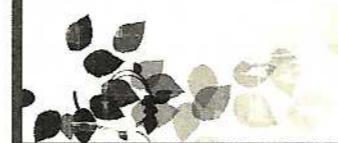
### 캠페인 <43,199>, 불평등을 최소화하자는 운동

인권연대에서 벌이는 ‘캠페인 43,199’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다. 재소자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지속해나가고 있는 ‘평화인문학’ 강의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도덕적 악,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만 하다. 무엇이 악이던가?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알면서 회피하거나 모른 채 유지시키는 행위가 도덕적 혹은 정치적 악이다. 자연적 악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악은 극복되어야 한다.

수감 생활 대신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한편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구속’이나 ‘자유’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결국 돈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구조의 연장이다.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 구조는 참으로 비인간적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이가 2009년 기준으로 43,199명이라니, 여전히 4만여 명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처분’을 받고 있다니,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 아닐 수 없다. ‘돈’으로 ‘자유’를 제약하거나 획득하도록 방조하는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이며, 극복의 대상이다. 도덕적 악을 극복하고 정치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저항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 정리했으니 차분히 읽어볼 일이다. 그리고 흥분하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낼 일이다. 43,199의 사회적 의미를 기억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벌금제에 대한 고민 6



## 43,199, 한국의 레미제라블, 장발장들의 원망이 쌓여가고 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범죄자.** 이 세 음절의 단어가 주는 느낌은 고약하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테러범, 방화범 그리고 살인범까지, 남을 해친 고약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마땅히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다.

### 평범한 시민들도 범죄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도 술하게 포함되어 있다. 법학 교과서는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깨뜨린, 특별히 해로운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게 상식이지만, 범죄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경범죄처벌법〉만 봐도 그렇다. 담배꽁초 버리기, 길거리에서 침뱉기, 구걸행위, 심지어 시끄러운 소리로 손님 모으기도 모두 범죄행위다.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외에도 많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빼소나니 음주운전만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거라 여기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신호등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사람, 무단횡단, 차도 보행,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를 걷지 않은 사람(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범죄자가 된다),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하지 않는 사람,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곧 범죄자다. 이 정도는 벌금 몇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車馬)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위험한 행동이니 처벌한다지만, 사실 만원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한 일도 자주 벌어지기 마련이다.

예비군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전시나 사변이 났을 때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군 훈련에 가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생각보다 범죄는 가까운 곳에 있고, 형사처벌도 그렇다. 그래서 한국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범죄자가 양산되는 거다.

### 감옥에 보내는 대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좋다.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모두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다. 매년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범죄자'를 가둬둘 곳도 없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서 얻는 이익도 별로 없다. 범죄자는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잊게 되고, 오히려 범죄에 오염되기도 한다. 개선효과도 거의 없다. 그래서 고안한 제도가 벌금형이다. 짓값에는 고통이 따라야 하는 법, 돈을 빼앗기면 당연히 고통스러울테니, 그것으로 짓값을 치르자는 거다. 원래 돈은 노동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빼앗으면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버금가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국가는 벌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고, 범죄자 입장에서도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정도가 약한 처벌을 받으니 이익이다. 물론 경미한 범죄에만 벌금을 물린다. 그래서 살인범이나 강간범, 방화범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 자유형(自由刑)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90% 이상이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다.

### 33만 명이 교도소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엔 벌금액만큼 교도소에 가둬 강제노역을 하게 한다. 이걸 환형유치(換刑留置)라고 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는 정말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리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매년 4만 명이 넘는다. 2009년에는 '43,199명'이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혀야 할 대기자는 지금도 33만 명쯤 된다.

벌금을 매기는 것도 너무 후진적이고, 불공정하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벌금을 매긴다. 하여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형은 처벌이 아니라 선처일 뿐이다. 재벌회장에게 물리는 몇 백만 원에는 어떤 고통도 뒤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누구나 똑같은 벌금을 내는 건, 공평하지 않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소득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내는데, 유독 벌금만 소득과 상관없이 내라는 건, 부자만을 살피는 횡포이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

### 벌금 매기는 방식이 후진적이고 불공정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수(日數)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벌금 20 일' 하는 식이다. 여기에다, 범죄자의 소득을 감안해 1 일 정액을 정한다. 벌금 일수는 5 일 이상 360 일 이하에 처할 수 있고, 1일 정액은 1유로에서 5,000 유로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가장 적은 벌금형은 5 유로(7천2백 원 정도), 가장 큰 벌금형은 1,800,000 유로(2십5억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소득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서만 36만 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독일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2012년 스페인에서 과속운전으로 걸린 축구선수 미하엘 발락은 1만 유로(1천4백4십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다. 발락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이미 은퇴했다며, 이제는 소득이 없으니 1천 유로로 줄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발락이 현역 시절 매주 10만 유로의 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독일에서부터 여론이 악화되었다.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다. 그러자 발락은 "변호사가 어리석은 주장을 해 즉시 해임했다."며 "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과했다. 발락에게 적당한 벌금이 1만 유로인지, 1천 유로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적어도 스페인이나 독일에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 일반의 '상식'이다.

한국의 법무부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언급만 몇 번 했을 뿐, 여태껏 외면하고 있다. 법무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서 나서면 간단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가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관심조차 없다.

벌금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한다.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조건도 까다롭다. 누구나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목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게 될 거다.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 봐주는 게 없다. 무조건 내야 한다. 징역형은 벌금형에 비해 더 무거운 범죄에 붙이는 더 무서운 형벌인데도 집행유예가 있지만, 더 가벼운 범죄, 더 가벼운 형벌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약간의 벌금이라도 내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 모순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하루 5만원씩 쳐주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하루 5만원으로 정해진

전 20년도 더 지난 옛날의 일이지만, 액수를 올려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10만원을 쳐주기도 하고, 때론 하루에 1억원 이상을 쳐주기도 한다. 판사 마음이다. 말은 노역수지만, 실제로 노역을 하는 벌금미납자는 거의 없다. 아예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가둬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데, 있더라도 그건 징역형 재소자들의 몫이다. 아무 일도 안하고, 그저 명하니 감방 안에 앉아서 정해진 날짜만큼 살다 나가는 게 교도소 생활의 전부다. 노역수들에겐 가석방도 없다. 단 돈 1만원이라도 다 제할 때까지 교도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

### 1993년생 벌금 미납 노역수

교도소에서 젊은 노역수를 만났다. 1993년생이라고 했다. 친구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고 했다. 그에겐 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부모와 친지들이 대신 내주지도 못했다. 결국 교도소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패배감과 모멸감이 어두운 낯빛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만약 벌금제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일수벌금제였다면, 그래서 그 청년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벌금이 선고되었다면,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었다면, 아직 젊은 나이이니 기회를 더 주자는 의미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면,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해 조금의 관심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그 청년은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을 거다.

잘못된 제도,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 매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 야만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잘못된 일이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뺑을 훔쳐 19년이나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독자의 심금을 울렸다. 법이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다고 몸서리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레미제라블〉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고전의 반열에 옮겨놓았다.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150년 전, 프랑스 이야기다. 하지만 2014년 한국에는 장발장처럼 억울한 '범죄자'들이 차고 넘친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간다.

별금제에 대한 고민 7



**장발장 43199**

서해성 / 소설가

레미제라블은 어떻게 장발장이 되었을까. '불쌍한 사람들'은 일본 거쳐 배를 타고 물결 검은 해협을 건너오면서 수염 잘 다듬은 '장발장'이 되었다.

레미제라블이었을 때 레미제라블은 혁명이었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좌절된 그 여름 봉기(1832)의 당위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 안에 이미 녹아 있었다. 장발장이었을 때 레미제라블은 자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혁명을 자선으로 '네다바이'당할 때 프랑스혁명의 3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제애 또한 박애로 바꿔치기당했다. 봉건 신분을 넘어선 시민적 관계의 상징이자 혁명의 근육인 연대는 종교적 의장과 언설로 엄숙한 표정이 되었던 것이다. 전도와 왜곡을 거치면서 열정은 사라지고 한순간에 정적인 고요가 봉기의 내면인 양 둔갑한 채로 혁명은 이 땅 교과서에 자애롭게 강림했다. 장발장과 함께.

장발장 수인번호는 해포 전 이 땅을 쓸고 간 뮤지컬 영화 첫줄에서 거듭 노래하고 있듯 24601이다.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서수와 기수는 인격을 소멸시킨다. 이 번호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그의 육신을 떠날 것이라고 믿는 건 오해다. 신체는 사라져도 번호는 사망하지 않고 남아 동사무소 호적계와 은행과 정보사회의 그물을 타고 떠돈다. 그 죽어 마땅한 숫자 중 하나인 24601에 사람들이 가슴을 친 이유는 간명하다. 뺑 한 조각을 훔친 죄에 대한 국가의 징치를 통해 익게 되는 근대 법률과 사법제도를 향해 던진 여전히 유효한 질문 탓이다. 24601은 배가 고파 옥에 들어간 모든 약자들을 대속하는 숫자로 문학사와 감옥역사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는 근대 법 양심의 가슴에 아로새긴 주홍글씨다.

24601이 한 개인일 수 없듯 한국의 장발장들에게도 공통의 수인번호가 있다. 43199. 이는 경미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오직 돈을 내지 못해 투옥된 숫자다(2009). 이들에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이대는 것조차 솔직히 사치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이 대목에 이르면 숫제 허울로 들릴 법하다. 명목이야 노역형이지만 이들은 단돈 몇십만 원을 강구할 테가 없어 봄뺑으로 들어가 옥밥을 얻어먹다 나올 때를 따름이다. 입법 취지와 달리 노동차압도 아닌 신체차압일 뿐인 하루 수감으로

끼나가는 건 5만 원이다. 어쩌다 지지리도 운이 없어 입감된 재벌이 하루 옥살이로 5억 원씩을 탕감해 254억 원을 51일 동안에 털어냈다는 전설은 도리어 비현실적으로 괴이쩍을 지경이다. 형벌의 형평성이 없는 법 앞의 평등은 조문화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빵 한 조각의 법률이란 대체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에서 빈자에게 가시 돋친 채찍인 법률이 부자에게는 양털이불로 따뜻하나니 법률은 정녕 문자로 된 수갑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서초동을 서성거리고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강자의 죄에는 안대를 하고 약자의 죄에는 장검을 휘두르고 있지 않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모진 자본율법사회는 가난을 불치의 질병으로 삼는 일을 넘어 이들을 사회에서 분리해내 배제, 거세시키고 있는 셈이다. 43199들, 이 숫자는 약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야만적 율법 지표다. 최하층 극빈자로 살아오는 동안 충분히 삶으로 처벌받고 다시 형벌로 이 중처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레미제라블들은 항변해줄 이 하나 없는 야수 같은 겨울을 옥방에서 나고 있는 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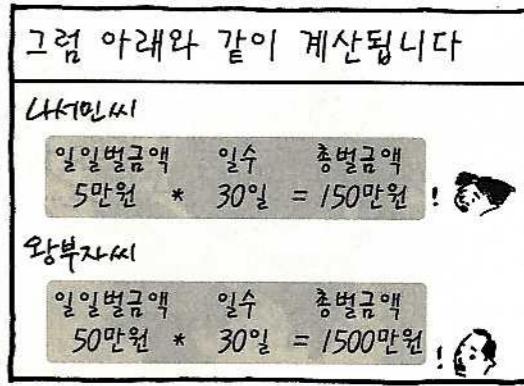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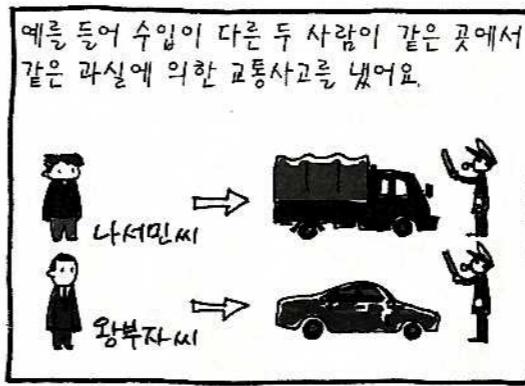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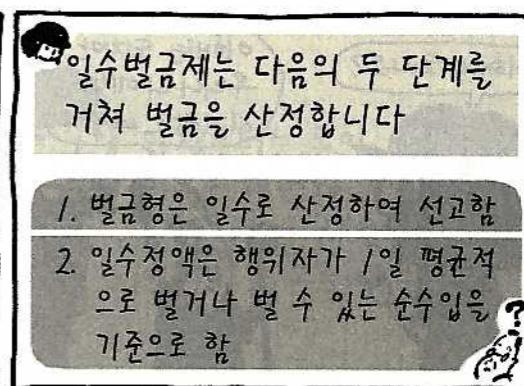
장발장은 오늘도 수인번호로 감방과 감방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가 던진 질문과 함께. 24601이 문학과 혁명과 프랑스 사회 저편까지 인간 양심을 촉진해왔다면 43199는 한국에서 형벌 민주화와 더불어 약자에 대한 모성 있는 법집행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다. 이 말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대의 고막은 지나치게 두꺼운 게 틀림없다. 24601의 눈물을 43199들에게 새삼 현정하고픈 까닭이다. 거세되지 않은 순정의 레미제라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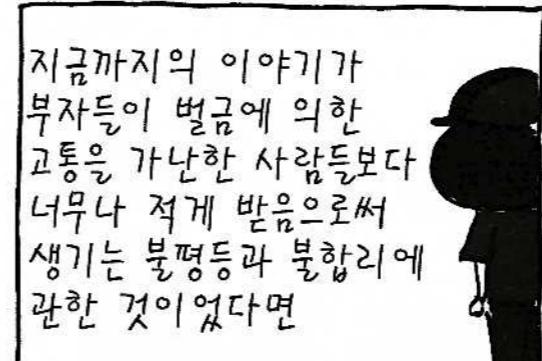
## 만화로 보는 &lt;43, 199&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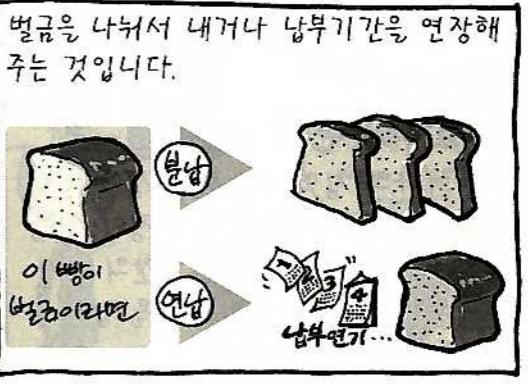
류호경 /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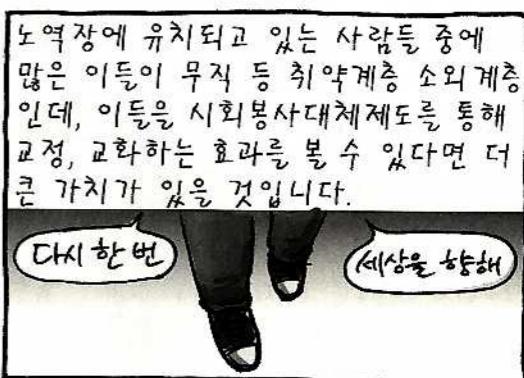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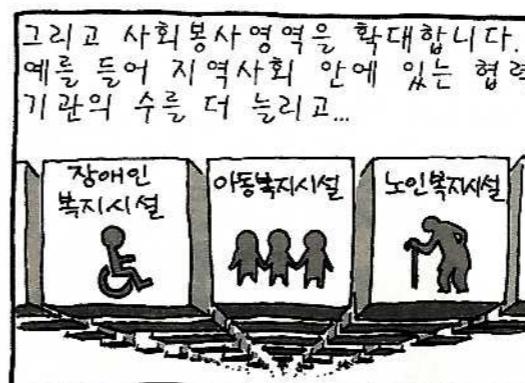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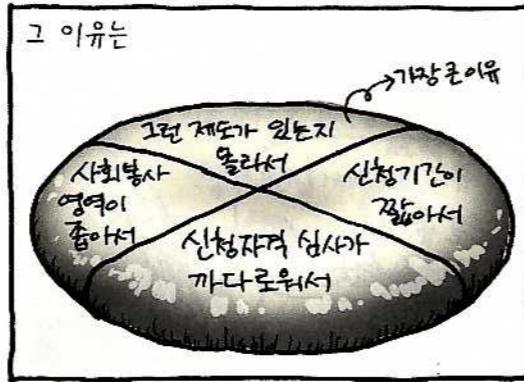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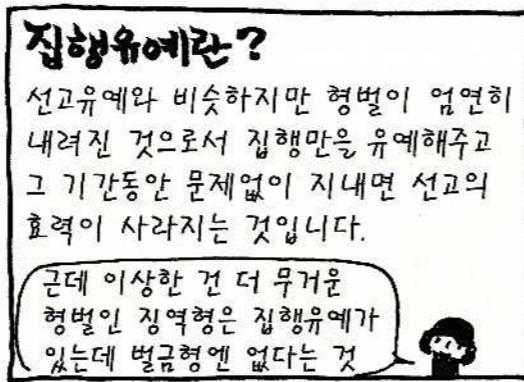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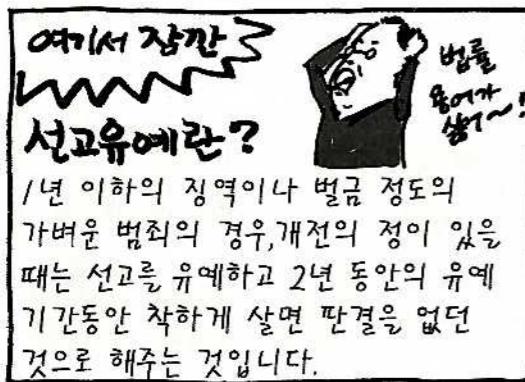
## 캠페인&lt;43/99&gt;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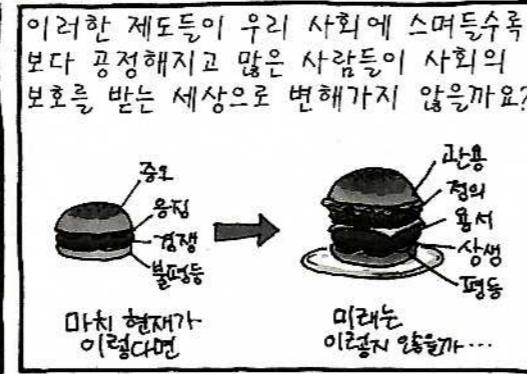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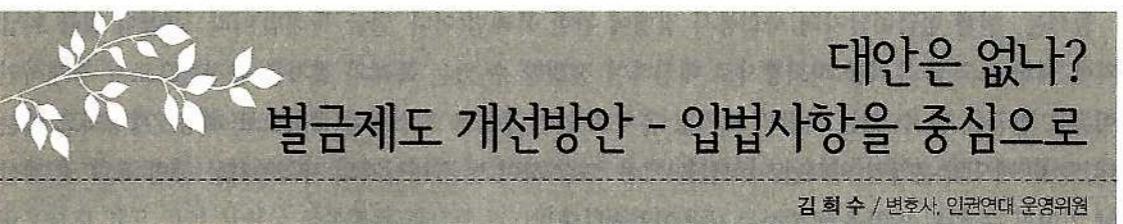












### 1. 가난과 형벌을 고민하며

2009년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43,199명에 이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40,100명에 이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금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금 시설에 갇힌 사람이 4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주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형사사법이 왜 가난한 사람에게 이토록 가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류호경(화가), 박경래(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해성(소설가), 여재훈(성공회 신부, 다시서기 지원센터 소장), 인권연대 오창의 국장, 육영수(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인수(천주교 인천교구 부개동성당 주임신부) 선생님 등과 함께 벌금제 개혁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43,199>로 정했습니다. 43,199란 숫자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속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물이 벌금제도 개선 방안이며, 본인은 함께 고민한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벌금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43,199>를 함께 고민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현행법은 형법에 정해진 벌금액을 양정하여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행위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서 경제력 불평등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 결국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법 개정 방향 및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현행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 특례법'이라 칭함)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형법 개정안과 벌금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합니다.

## 2. 형법 개정안

### 가. 제안 이유

경제력의 불평등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 결국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벌금형 제도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단기자유형 폐해로 환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보다 더 중한 책임과 해악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 이념에 따라 형벌을 민주화 할 필요성이 있어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하여 대다수 학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재산 상태, 지불 능력 등을 조사하여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은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내용, 의료보험 가입 내용, 각종 세금 납부 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전산 통합 시스템 등 경제적 정보수집의 수단 및 체계의 비약적 발달과 용이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론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으며, 사법 정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벌금 관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나. 주요 내용

#### 1) 선고유예(안 제59조 제3항)

형법 제59조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수벌금제 도입 취지가 형벌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형벌의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취지이므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선고유예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제도가 너무 남용될 우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간,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서 형법 제59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 제3항의 신설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180일 이하의 일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2)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안 제62조)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 더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누락되어 있어 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근거 규정을 두어 형선고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3) 일수벌금제 도입(안 제69조)

현행 총액벌금제를 폐지하고, 일수와 1일 벌금액을 구분하여 벌금형을 양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수는 행위자의 양형책임에 따라 확정하고, 1일 벌금액은 행위자의 개인 사정과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불법의 정도가 동일한 사안에서 경제적 사정이 상이한 경우에 관련자들에게 동일한 형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정하고, 벌금형 일수 산정을 위한 행위자의 수입 및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69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9조(벌금)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의 일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1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수 있는 순수입을 그 기준으로 한다. 1일수의 벌금 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및 일수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벌금의 분납 · 연납(안 제69조의2)

현재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벌금 분납 및 연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 분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분납 취소 제도를 두어 벌금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형법 제69조의2 신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9조의2(벌금의 분납 · 연기)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5) 대체자유형 등 도입(안 제69조의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환형처분에 해당하는 현행 노역장 유치제도(형법 제70조)를 폐지하고 대신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인의 재사회화에 유용한 수단으로서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체자유형으로서의 사회봉사제도는 행위자의 자아발견과 재사회화에 매우 유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위자의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개선에 더욱 기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국가 재정지출 부담 등이 줄어드는 재정 기여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9조의3 신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69조의3(대체자유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의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

### 6) 구금일수 공제(안 제71조)

현행 총액벌금제 및 노역장 유치 제도(형법 제70조)를 폐지하고,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 유치일수 공제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금일수 공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수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일수에 상응하는 구금일수를 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형법 제71조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구금일수의 공제)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일수에 상응하는 구금일수를 제한다.

## 3. 벌금 특례법 개정안

### 가. 제안 이유

벌금 특례법에 기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과 재사회화에 매우 유용한 결

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특례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 현상 및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여 형벌을 민주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벌금 특례법 개정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나. 주요 내용

##### 1) 사회봉사 개념의 확대(안 제2조 제2호)

현행 벌금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사회봉사」란 보호관찰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개념을 좁게 규정함으로서 사회봉사 영역을 확대·적용하고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도 사회봉사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 및 벌금 미납자를 국영, 관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벌금형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을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지원 등에 운영되는 집행 분야는 이미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 법률적 근거를 갖출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벌금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 및 벌금 미납자를 국영, 관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벌금형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을 포함한다.

##### 2) 고지 의무 신설(안 제3조의1)

현행 제도에서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벌금 미납자가 이를 몰라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을 분납 또는 연기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벌금 특례법 제3조의1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1(고지의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을 분납 또는 연기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검사와 법원은 각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사회봉사 신청 기간의 확대 등(안 제4조 제1항)

현행 벌금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은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벌금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비현실적이고, 신청 기간도 너무 단기간이어서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의'를 삭제하여 법원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일임하고,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사회봉사 신청 자격 제한의 완화(안 제4조 제2항 제2호)

현행 벌금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법원의 노역장 유치 선고 유무에 의하여 사회봉사 신청 자격을 박탈함으로서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제도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봉사 신청 자격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자유형과 봉사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과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 5)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안 제6조 제6항)

현행 제도에는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지원 조치가 결여되어 있어,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가 벌금 미납자의 재사회화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경우 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적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국가 경비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경우 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맷음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벌금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헌법의 평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현실, 독거 노인이 쓰레기를 줍다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구금되는 이런 충격적인 현상은 이제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문명국가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형벌 체계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 이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궁핍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포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 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반사적 효과로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구금함으로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도 아울러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첨부 1】 현행 형법과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설>	<p>제59조          ③ 180일 이하의 일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p>	<신설>	<p>제69조의2(벌금의 분납·연납)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p>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p>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p>	<신설>	<p>제69조의3(대체자유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의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p>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p>제69조(벌금)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의 일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1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수 있는 순수임을 그 기준으로 한다. 1일수의 벌금 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및 일수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사 를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삭제>	<p>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p>

## 【첨부 2】 현행 벌금 특례법과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 및 벌금 미납자를 국영, 관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벌금형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을 포함한다.	제2조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 및 벌금 미납자를 국영, 관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벌금형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을 포함한다.
제3조의1(고지의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을 분납 또는 연기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검사와 법원은 각 서면으로 피고 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2.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 할 것을 명받은 사람	<삭제>
제6조 ⑥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경우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참고 자료 –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제공

## 1.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자 인원수

※ 유치자 1인에 대하여 수건의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노역장 유치 건수와 인원수는 차이가 있음

연도	유치 건수 현황	연도	유치 건수 현황
2008	38,409	2011	38,242
2009	<b>43,199</b>	2012	39,283
2010	41,370		

##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현황

## 2. 벌금형 대체사회봉사제도 인정한 수

연도	신청	검사청구	청구율	법원허가	허가율
'09.9.-12.	7,038	6,361	90.4	6,127	96.3
2010	7,267	6,815	93.8	6,594	96.7
2011	4,860	4,658	95.8	4,584	98.4
2012	3,380	3,284	97.2	3,250	99.0

## 사회봉사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

## 3. 검찰징수 사무규칙상 연납과 분납을 허용한 수

연도	분납 현황			납부연기 현황		
	신청건수	허가건수	허가율	신청건수	허가건수	허가율
2008	14,910	14,850	99.59%	657	644	98.02%
2009	55,027	55,010	99.96%	3,348	3,345	99.91%
2010	21,291	21,200	99.57%	1,190	1,179	99.07%
2011	20,081	20,075	99.97%	739	739	100.00%
2012	18,118	18,116	99.99%	574	574	100.00%

## 최근 5년간 벌과금 분납 · 납부연기 현황 (단위 : 건, %)

## 캠페인 <43,199> 참여 방법

시민 누구나,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벌금제 개혁을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벌금제는 고쳐야 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시민들에게 '법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켜야 할 법질서는 존중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데서 멈추면 안됩니다. 법이 제대로 지킬만한 것인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바로 잡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벌금제와 관련해서 국가는 자기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땐, 시민들이 나서서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 1) 이 자료집을 주변에 나눠 주십시오.

인권연대로 연락주시면, 자료집을 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자료집을 나눠주시고,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시는 곳에 지정하는 부수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집의 인쇄비는 1,500원쯤 되고 발송비도 대략 1,500 원쯤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료집 인쇄비를 도와주시면 더 많은 자료집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 인쇄 비용을 후원하실 분은 국민은행 491001-01-183310 (예금주: 인권연대)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2)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인권연대 홈페이지([www.hrights.or.kr](http://www.hrights.or.kr))에 벌금제 개혁을 위한 서명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명용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 3) 국회의원에게 연락하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상식적 사안인데도 막상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없어 잘못을 고치지 못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 국회의원이나, 살고 계신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벌금제를 고쳐달라고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글을 남기시거나, SNS를 통해 벌금제 개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43,199> 자료집 신청 및 문의(02-749-9004)

### 2014.3.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43,199> 자료집

- 제 작 2014년 3월 1일
  - 펴낸곳 인권연대
  - 문 의 인권연대
-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30길 13, 402호(장충동2가 주암빌딩)  
전화: 02)749-9004 팩스: 02)3672-0438  
홈페이지: [www.hrights.or.kr](http://www.hrights.or.kr)  
이메일: [rights1999@naver.com](mailto:rights1999@naver.com)